

# 2021년도 제3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 I. 회의 개요

- 일자: 2021. 11. 19.(금)
- 방법: 온라인심의
- 참석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
  - 심의위원: 신창환(분과위원장), 김연희, 심장섭, 위정현, 하병현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**<의결안건>**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## 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5건(안건번호 제2021-162561호~제2021-162610호)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### III. 주요내용

- A 위원: 순번 1번~50번 {'[REDACTED]' 사이트의 '(영화)캡샵: 미친놈들의 전쟁 (2021)' 등 55건의 게시물}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B 위원: 금번 심의안건인 순번 1번~50번 영화 "캡샵 미친놈들의 전쟁 ", "007 노타임 투 다이", "듄" 등 55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 저작물 (영화) 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써, 이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.
- C 위원: 순번 1번~50번 ([REDACTED] 사이트의 영화 캡샵: 미친놈들의 전쟁) 등 55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 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
- D 위원: 금회 심의 대상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

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- E 위원: 순번 1번~ 50번 {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 사이트의 영화 캡샵 미친 놈들의 전쟁(2021)' 등 55건의 게시물} 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 영화 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

2021년 제34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 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11. 19.

분과위원장 신창환

위원 김연희

위원 심장섭

위원 위정현

위원 하병현